

“계엄 전尹 만난 것 확인”...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내란중요임무중사 혐의로 신청”
김용현 보안폰 확보위해 강제수사
남태령 수방사 압수수색 진행 중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 임무중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전날 공조수사본

부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경찰 특별수사단은 통상 절차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 있다.

특수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보안폰이 있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보안폰을 운용하는 서버가 위치한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군과 경찰에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는지 증명할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 후 첫 공조수사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을 통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다”는 더

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비행제한구역)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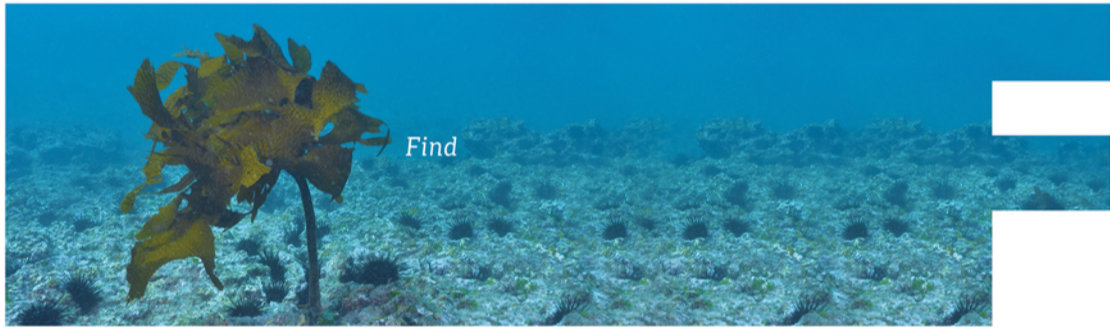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위 포고령에 대해 “국무회의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1급 회의를 소집한 이후 내부 문자를 보고 알았다. (오후) 11시28~29분 정도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비상계엄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포고령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Sea of life

바다와 사람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세상
세계 최고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만들어 갑니다.



주요사업 | 바다숲 조성, 바다목장, 수산종자 자원관리, 국제음서버 운영,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조성,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 상고기각 1분만에 원심 확정
실형 확정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1분만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즉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함께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주의, 죄형법정주의, 공모 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진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출석 통보 후 이른 시일 내 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춘 기자